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어선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3.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어선 추진기관의 제작·검사 기술의 발전과 기관 개방검사에서 발생하는 어업인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추진기관의 비개방 정밀검사를 통해 개방검사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의 어선에 승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며,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은 10년 주기로 추진기관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진기관 운전시간이 적은 2~5톤 미만 어선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비개방정밀검사를 통해 상태가 양호함을 입증한 경우, 개방검사 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안 별표 16. 바목)

* (가칭)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해수부 고시 제정 예정)

나.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최대승선인원 중 어선에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으로 수산자원조사원 허용 (안 제64조)

다.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위치정보활용 목적에 군의 해양경계작전 지원 근거를 마련 (안 제42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의 완료

라.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총톤수측정·개측”을 “총톤수측정·재측정”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총톤수측정 또는 개측의 신청)”을 “(총톤수측정 또는 재측정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개측”을 “재측정”으로, “측정·개측신청서”를 “측정·재측정신청서”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개측”을 “재측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개측”을 “재측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개측”을 각각 “재측정”으로 한다.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개측”을 각각 “재측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범장”을 “돛(범장, 帆裝)”으로 한다.

제41조제2호 중 “적재하지 아니하고”를 “싣지 않고”로 한다.

제42조의2제3항 중 “대응·조사”를 “대응·조사, 군의 해안경계작전 지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밀성(水密性)”를 “수밀성(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한반경”을 “제한반지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리에 착수”를 “수리를 시작”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개측”을 “재측정”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정비에 착수”를 각각 “정비를 시작”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제한반경”을 “제한반지름”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

별표 1의 제목 중 “(제3조의2제1항제3호 관련)”을 “(제3조의2제1항제4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경하상태”를 “경하(사람, 화물 등을 적재하지 않은 어선자체의 무게. 이하 같다)상태”로, “경하중량”을 “경하중량(사람, 화물 등을 적재하지 않은 어선자체의 중량.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수고(水高)”를 “물높이”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이 중저의 수압시험의 기준란, 외판의 수압시험의 기준란, 선수격벽 후방에 있는 묘쇄고의 수압시험의 기준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의 선수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수압시험의 기준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의 수밀격벽의 수밀문의 수압시험의 기준란, 선미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선미관구확실의 수압시험의 기준란, 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선수창 또는 선미창의 수

압시험의 기준란, 펌프실과 겸용하지 아니하는 코퍼댐의 수압시험의 기준란 및 복판타의 수압시험의 기준란 중 “수고압력”을 각각 “물높이에 따른 압력”으로 하며, 같은 목 항목란 중 “선미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선미관구획실”을 “선미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선미관구획실(선미관이 설치된 구역)”으로 하고, “제1급 폐쇄장치를 설치한 선루단격벽의 출입구”를 “제1급 폐쇄장치를 설치한 선루단 칸막이벽의 출입구”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11) 중 “선미관실 장치”를 “선미관실(선미관seal: 선미관 방수장치)”로 하고, 같은 호 아목2) 중 “호중”을 “호중(어선위치알림 중.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1) 및 같은 호 다목2) 중 “(칭량”을 각각 “(무게측정”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중 “수고(水高)”를 “물높이”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이중저의 수압시험의 기준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의 선수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수압시험의 기준란, 선미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선미관구획실의 수압시험의 기준란, 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선수창 또는 선미창 및 디프 탱크의 수압시험의 기준란, 펌프실과 겸용하지 아니하는 코퍼댐의 수압시험의 기준란 중 “수고압력”을 각각 “물높이에 따른 압력”으로 하고, 같은 목 항목란 중 “선미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선미관구획실”을 “선미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

다) 및 선미관구확실(선미관이 설치된 구역)”으로 하며, “제1급 폐쇄장치를 설치한 선루단격벽의 출입구”를 “제1급 폐쇄장치를 설치한 선루단 칸막이벽의 출입구”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12)라) 중 “램프게이트”를 “램프게이트(연결로 출입문)”로 한다.

별표 15 제2호가목2) 중 “시체스트”를 “시체스트(Sea Chest, 해수 유입구)”로 하고, “빌지킬”을 “빌지킬(Bilge Keel, 어선이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측과 선저 사이의 만곡부에 설치된 얇고 긴 판)”로 한다.

별표 16 제3호바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더목2) 중 “경하중량산정표”를 “경하중량산정표(사람, 화물 등을 적재하지 않은 어선자체의 중량산정표)”로 한다.

1)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 10년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7호에 따른 낚시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미만 어선 중 정기검사준비사항의 개방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시점과 15년이 되는 시점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관의 상태가 양호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준비사항의 개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검사를 연장할 수 있다.)

별표 17 제3호나목2)나)(1)의 “단조용 가열로”를 “단조용(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용도) 가열로”로 하고, 같은 2)의 다)(1)의 “단조기계”를 “단조기계(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기

계)”로 하며, 같은 목 16)나)(7)의 “UV코팅기”를 “자외선 코팅기”로 한다.

별표 18의2 제2호라목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별표 19의 제1호가목 중 “제한반경”을 “제한반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건조어선의 선체재질란의 “FRP”를 “강화플라스틱(FRP)”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목 “어선 총톤수 측정 개측 신청서”를 “어선 총톤수 측정 재측정 신청서”로 하고, 앞쪽 선체재질란의 “FRP”를 “강화플라스틱(FRP)”로 하며, 앞쪽 및 뒷쪽의 “개측”을 각각 “재측정”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범장”을 “돛(범장, 帆裝)”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및 뒷쪽의 “개측”을 각각 “재측정”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용골”을 “용골(선체 중앙 뼈대)”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용골”을 “용골(선체 중앙 뼈대)”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및 뒷쪽의 “개측”을 각각 “재측정”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용골”을 “용골(선체 중앙 뼈대)”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중 “톤수개측”을 “톤수재측정”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중 “범선의 범장”을 “범선의 돛(범장, 帆裝)”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중 “범장”을 “돛(범장, 帆裝)”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중 선질란의 “FRP”을 “강화플라스틱(FRP)”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중 선질란의 “FRP”을 “강화플라스틱(FRP)”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중 “제조·개조·수리·정비에 착수”를 “제조·개조·수리·정비를 시작”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중 “제한반경”을 “제한반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중 “제한반경”을 “제한반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앞쪽 중 재검사등의 종류란의 “측정·개측”을 “측정·재측정”으로 한다.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중 선체재질란의 “FRP”을 “강화플라스틱(FRP)”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선령”이란 어선이 진수한 날부터 경과한 기간을 말한다.	7. ----- --- 지난 -----.
8. ~ 10. (생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3조(신청·신고등의 의무자) ① 이 규칙에 의한 신청·신고 기타 서류의 제출과 증서·증명서의 반환은 어선의 소유자(어선관리인 또는 어선임차인을 포함하며,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어선의 총톤수측정·개측의 신청등의 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 또는 선장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제3조(신청·신고등의 의무자) ① ----- ----- ----- ----- ----- ----- ----- ----- ----- ----- ----- 총톤수측정·재측정 ----- -----. ----- ----- ----- -----

수 있다.

② (생 략)

제12조(총톤수측정 또는 개측의 신청) ①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그 개측(이하 “총톤수의 측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어선총톤수 측정·개측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도면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②·③ (생 략)

제14조(총톤수의 측정등) ① ~ ③ (생 략)
④ 총톤수·순톤수·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에 따른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총톤수측정 또는 재측정의 신청) ①-----

----- 재측정-----

----- 측정·재측정 신청서-----

-----.

1.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총톤수의 측정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재측정-----

-----.

제15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총톤수의 개측을 한 결과 이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여야 할 사항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7조(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13조
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
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 6. (생략)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
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서류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
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국제총톤수 및

②-----
----- 재측정-----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 재
측정-----

②-----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측정등을 받은 어선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할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사용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한 때에는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의 생략 및 위축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 신청) ① (생략)

재측정

③-----

재측정

④-----

재측정

⑤----- 재측정

제18조(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한 때에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의 생략 및 위축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3조(등록사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 재측정-----

-----.

③-----

-- 재측정-----

---.

④-----
-- 재측정-----

--.

제23조(등록사항) ① -----

--.

1. ~ 6. (생 략) 7. 범선의 <u>범장</u>(범선의 경우에 한한다) 8. ~ 20. (생 략) ② (생 략) 제41조(만재흘수선의 표시 생략)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1. (생 략) 2. 선단조업형태의 어업을 하는 어선 중 어획물 또는 그 가공품을 해당 어선에 <u>적재하지 아니하고</u> 어로작업에만 종사하는 어선 3. ~ 5. (생 략) 제42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로부터 수집한 어선의 위치정보는 어선의 안전운항, 불법 어업·영업의 단속, 수산자원의 조사, 해양사	1. ~ 6. (현행과 같음) 7. ----- <u>돛(범장, 帆裝)</u> ----- 8. ~ 2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만재흘수선의 표시 생략) ----- ----- ----- -----. 1. (현행과 같음) 2. ----- ----- ----- <u>신지 않고</u> ----- ----- 3. ~ 5.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사
 및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의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
 여야 하며, 해당 어선의 소유자
 나 선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
 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임시검사) ① 법 제21조제
 1항제4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의 길이, 너비, 깊이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선체 주요부의 변경으
 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水密
 性)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
 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
 는 경우

가. ~ 라. (생략)

2. ~ 10. (생략)

11. 하역설비의 제한하중, 제한
 각도 및 제한반경(이하 “제한
 하중등”이라 한다)을 변경하
 려는 경우

12. ~ 14. (생략)

----- 대응·조사,
군의 해안경계작전 지원 -----

-----.

제47조(임시검사) ① -----

 -----.

1. -----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 -----

가. ~ 라. (현행과 같음)

2. ~ 10. (현행과 같음)

11. -----
 ----- 제한반지름 -----

12. ~ 1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개조 또는 수리를 하는 어선소유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에 착수하였을 때부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48조(임시항행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받을 장소로 항행하려는 경우

2. 3. (생략)

② ~ ④ (생략)

제52조(예비검사)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예비검사는 해당 어선용품에 대하여 제조·개조·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하였을 때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어선용품 중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인 경우에는

② (현행과 같음)

③ -----

----- 수리
를 시작하였-----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임시항행검사) ① -----

-----.

1. ----- 재측정

2.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예비검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정비를 시작하였
을 -----

-----.

해양수산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곳 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
 칩」 제54조제4항에 따라 팽창
 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를
 발급 받은 곳에서 수리 또는 정
 비에 착수하였을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 ⑦ (생략)

제61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하역
 설비의 제한하중등에 대하여 확
 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하역장
 비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제한하중등에 대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제한하중등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 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지브크레인(Jib Crane): 제한
 하중 및 제한반경

3. 4. (생략)

② ~ ⑤ (생략)

제64조(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은 어선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 정
 비를 시작하였-----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1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제한반지름

3.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4조(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 어선에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해양사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승선하는 사람은 최대승선인원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1. ~ 9. (생략) <u><신설></u> ③ (생략)	-----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u>10.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u> ③ (현행과 같음)
--	---